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4
----------	-----

제출년월일 : 2017.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시키고,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에 당연적용 대상이며, 반복규정 금지원칙에 따라 삭제

- 현행 제3조(정관) 및 제12조(사업연도)

나. 현행 조례와 법령과의 불일치 규정 삭제

- 현행 제6조(임원) 및 제7조(임원의 임무)

: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9조제1항)

- 현행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9조(의결정족수)

: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임(법 제8조제1항제8호)

- 현행 제10조(직원의 임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2조제4항)
- 현행 제13조(사업계획서 등)
: 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저촉되며, 적법하게 수정하더라도 반복규정이므로 삭제

다. 그 밖의 조례입법의 각종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순서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10. 27. ~ 11. 16..)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법인격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되, 그 구체적 위치는 해당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인의 창작, 전시, 교육 등 활동 보급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굴·육성
3. 우수 예술창작품의 개발 및 유망 예술인의 발굴 지원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콘텐츠의 발굴·육성 및 문화예술 유산의 계승·발전
5. 국내·외 교류 및 홍보
6.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7. 그 밖에 군수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 강원도 또는 군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2.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

제5조(재산) 재단의 재산(제3호에서 “재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

3. 재산의 운용수익금 및 사업수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6조(출연 등) ①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그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요청을 받거나 재단이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2. 수익사업

3.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의 위탁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재단과 군수 및 재단이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처리 중인 사항 중 법 시행일(2015.9.25.)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되, 그 이후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

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연락처	(033) 330 -2253